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1261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미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양래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과 피고 사이에 2023. 7.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0515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7,932,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2023. 9. 7. 기준 원리금 합계 46,495,772원 및 그 중 원금 5,723,775원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3,815,849원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3,815,849원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1,926,325원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953,963원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과 피고는 2023. 2. 14.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199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6. 12. 4. 접수 제607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이다.

3) C과 피고는 2023.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 명의로 망인의 사망일자인 2023.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3. 7. 31. 기준으로 C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1/2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 C의 남매로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한편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망 H를 부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C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2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닌 피고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부양으로 인한 기여분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여분을 이유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기여분의 존재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기여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에 더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 망 H, C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어서(2024. 4. 2.자 피고 답변서 2쪽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금원 지출 내역은 피고가 망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함에 따른 대가(차임)를 지불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지출 내역을 망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망인을 부양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

별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2)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판결 등 참조).